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법교육 실천**

- 일시 : 2011. 5. 21(토) 14:30 - 20:0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 301호
- 주최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후원 : 법무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 ■ 행사 프로그램 ■ ■

### 1부: 개회식 및 기조 발제

사회 : 김상돈(서울 상원초, 본 학회 사무국장)

- . 개회선언 .....사회자
- . 국민의례 .....다같이
- . 개회 인사 .....허중렬(서울교대, 본 학회 회장)
- . 축 사 .....김수남(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 기조발제 : 일본의 시민교육: 순응(順應)과 귀속(歸屬)의 국민 형성  
..... 발표 : 권오정(일본 류코쿠대학 교수)

### 2부: 상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법교육 실천

사회 : 박용조(진주교대, 본 학회 부회장)

- . 주제발표 1 :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무부 현황 및 과제  
..... 발표 : 손영배(법무부 법교육팀 검사),  
토론 : 박인현(대구교대), 최윤진(중앙대)
- . 주제발표 2 : 상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초등 법교육 실천 방안  
..... 발표 : 김다현(한국법교육센터),  
토론 : 심옥령(청심국제초), 박상준(전주교대)
- . 주제발표 3 : 상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 실천 방안  
..... 발표 : 정상우(인하대),  
토론 : 김영운(서울 수락고), 천희완(서울 대영고)
- . 총평 .....임경수(공주대, 본회 부회장)

### 3부 : 폐회식

사회 : 김상돈(서울 상원초, 본 학회 사무국장)

- . 공지사항 .....김상돈(서울 상원초, 본회 사무국장)
- . 폐회선언 .....허중렬(서울교대, 본 학회장)
- \* 만찬의 시간(장소: 두부촌) .....다같이



## ■ ■ 목 차 ■ ■

### 개회 인사 ● ●

인사말씀 .....허종렬

### 기조발제 ● ●

일본의 시민교육: 순응(順應)과 귀속(歸屬)의 국민 형성 .....권오정(1)

### 주제발표 ● ●

####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법교육 실천**

[주제발표1]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무부 현황 및 과제 .....손영배(15)

[주제발표2]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초등 법교육 실천 방안 .....김다현(25)

[주제발표3]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 실천 방안 .....정상우(37)



## 인사 말씀

평소 법과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 발표회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법교육 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학회로서는 통산 제 9차 학술발표회가 됩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법교육 실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차원으로서 법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 지평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 실천 전략 등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법교육의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초·중등 법교육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법교육 논의에도 지평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천 전략에 고민하는 현장 교사들에게도 유용한 정보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가 학술적 논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학교 교육현장의

실천적인 변화로 파급되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학술대회의 기초 발제를 맡아 주신 일본 류코쿠대학의 권오정 교수님과 발제와 토론을 흔쾌히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학술 발표회에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신 법무부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개최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신 서울교육대학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학술대회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다 해준 학회 사무국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21일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허    종    열    드림



# 기조 발제

일본의 시민교육: 순응(順應)과  
귀속(歸屬)의 국민 형성



[기조 발제]

## 일본의 시민교육 - 순응(順應)과 귀속(歸屬)의 국민형성 -

권 오 정(일본 · Ryukoku 대학 교수)

(1)

오늘의 이 keynote 를 부탁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학회에서의 발언은 계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의 결과, 혹은 그에 토대한 권위 있는 보고여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최근 연구한 실적도 없고, 그런 교육이 일본에 존재하는지 의문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 의문과 망설임을 제치고 여러분 앞에 나선데 대해 먼저 변명을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탁받은 데마라면 부분적인 분석보다는 포괄적인 직관에서 얻은 결과에 토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신뢰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위하면서 이번 주말을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의 시민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까닭은 3 월 11 일 일본 동북·관동 지방에서 일어난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재난을 만난 일본 사람들이 냉정하고 의연한 태도로 질서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훌륭한” 태도와 행동은 “훌륭한” 시민교육을 받아왔기에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적인 기대를 품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기대입니다. 교육은 인간을 바르게 변화시킨다, 법을 가르치면 legal mind 가 육성되고, 그리되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바람직한 자질을 갖춘 인간 - 시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시민교육에 종사해왔고, 법 교육에 에너지를 쏟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의 여러분들은 어두움

#### 4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과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해 오는 극한적인 카오스의 상황에서도 소란과 도둑질, 약탈을 거부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코스모스적인 인간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민들은 당연히 “훌륭한” 시민교육, 법 교육을 받아왔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재난에서 보여준 일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과연 훌륭한 시민교육, 법 교육을 받은 결과로 나온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교육(특히 여기서는 학교교육) 과 시민행동과의 인과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의 학교교육이 “훌륭한” 시민 형성에 공헌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 “훌륭한” 시민 혹은 시민행동이란 무엇인가 그 실체적인 의미를 정확히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가치를 동반하는 것이어서 “훌륭한” 시민적 자질의 의미 그 자체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와 같은 섬세한 작업은 제쳐두고,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일본 학교교육의 흐름 속에서 일본 사람들의 “훌륭한” 태도와 행동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을까, 거친 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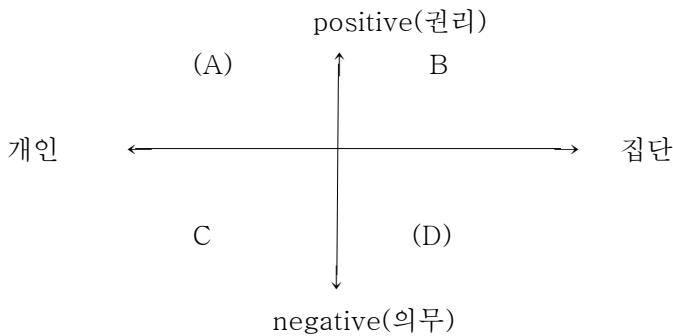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시민교육은 이루어져왔습니다. 시민 혹은 시민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공동체든 스스로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성원의 일체감과 역할수행 능력의 고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체제유지·강화에 필요한 hierarchy 를 만들어 놓고, 각 구성원에게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고, 특정한 가치관의 indoctrination 을 통해서 충성심을 고양합니다. 유럽의 고대 polis 에서도, 중세교회 체제에서도, 절대왕권 체제에서도 그러한 시민교육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대국가의 출발 이후,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교육의 실체는 nationalism 교육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시민교육이라기보다 국민형성 교육이라고 해야겠지요. 20 세기에 와서도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려는 시민교육의 경향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현대 시민교육의 강화를 위한 대표적 교육 운동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Social Efficiency Movement, 그

[기초 발제] 일본의 시민교육 - 순응(順應)과 귀속(歸屬)의 국민형성 - · 5

결과로 개발된 Social Studies 에서도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역할수행 능력이 강조되고 있었습니까? 최근 영국의 National Curriculum 에 등장하는 citizenship 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지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육성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의 전개과정에서는 물론 개개인의 교양과 인격적 발달을 촉구해야 한다는 생각도 성숙해왔습니다. 특히, nationalism 교육이 강화되던 근대국가의 형성, 보편화시기에 교육의 인간형성(개개인의 발달) 기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주제와 먼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일본의 시민교육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점을 확실히 하고자 다 아는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다 아는 사실” 에 토대하여 두 개의 continuum(지표축) 을 교차시켜 시민교육을 유형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특히 A 와 D 유형에 주목하면서 일본의 시민교육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일본의 근대국가는 불행하게도 제국주의의 흉내를 내면서 성장했습니다.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국민” 형성을 위한 보통교육은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이때의 시민교육은 전형적인 D 형으로 nationalism 에 토대하여 국가·사회에 공헌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은 제국주의적인 유럽 국가를 모델로 한 일본국의 근대화를 주창했고, 그들의 지사(志士)로서의

## 6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역할은 온 국민의 충성심,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시민교육의 방향이었고, 이 흐름은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겠습니다.

1945년 전쟁에 패배한 일본은 적어도 외형상 정치·경제·문화·사회의 모든 것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도 예외일 수 없었고, 미국의 교육제도로 바꾸어 갔습니다. 미국의 영향 아래 교육기본법을 새로 만들었고, 학교교육의 틀도 미국식을 따랐습니다. 시민교육 역시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래 시민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교과로 간주해 온 역사, 지리, 공민(수신)을 폐지하고 미국에서 개발된 Social Studies(사회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념(혹은 이론)적 차원에서 보자면 일본의 교육은 Herbart 적인 도야론에서 미국의 진보적인 경험주의로 급선회했습니다. 경험주의 교육이념, 이론에 토대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전후 일본의 재생을 가능케 하는 길이며, 일본의 민주화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경험주의 교육이념의 구체적인 실물로서 일본의 일반인들에게 제시된 교육기본법은 미국에서도 리버럴 파로 지목되는 교육학자들의 생각이 집약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일본 사회과의 모델이 된 것은 역시 미국에서도 리버럴하다고 평가되던 버지니아주의 사회과였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교육은 그 당시 교육 사조상 극우에서 극좌로 선회한 것입니다.

경험주의 교육 이념이 실천적으로 구체화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의 실제 생활에 밀착된 문제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실천과 그 실천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사고)의 발달을 꾀한 점입니다. 경험주의 교육에서 말하는 “생활 중심 교육”이라는 주제는 전쟁 - 패전 과정에서 도탄에 빠진 일본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것이었겠지요. 반드시 경험주의 교육 이념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자각적인 의도가 분명치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패전한 일본의 구석구석에서 비참한 생활환경과 싸우며 자라는 어린이들의 모습 - 역경을 극복하며 발달해 가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교육 실천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예컨대 무차쿠 세이코오(無着成恭) 편저(1969) 『산골 메아리 학교(山びこ學校)』(角川文庫)는 패전 후 일본의 교육실천의 성과기록으로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활 중심의 교육 실천은 비참한 현실 비판이 더해져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어가는 등 본래의 경험주의 교육이념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생활 중심 교육이 일본 교육 현장을 자극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활 중심교육이 교육과정 안에서 구체화된 것이 “종합학습(總合學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소학교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종합학습은 교과와 경계를 넘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적 자질을 육성하자는 경험주의 교육 이념의 일본판 결정이었다고 하겠지요.

둘째 주입식 지식 교육을 지양하고, 개성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어린이를 육성하자는 경험주의 교육의 본체라고 볼 수 있는 어린이 중심교육을 피한 것입니다. 이 교육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어린이들의 학습량을 줄이고, 어린이 개인의 성적에 의한 석차 표기를 폐지하고, 드디어 수업 일수까지 줄여 주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을 “유토리 교육(Pressure Free Education)”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주의 교육은 곧 유토리 교육으로 정리, 실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험주의 교육이념에 토대한 교육의 열매는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의 육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최근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개성과 여유를 함께 갖는 바람직한 지구사회시민의 양성 가능성까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전후 일본이 추구해온 경험주의 교육이 성공리에 정착해왔다면 “훌륭한”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이 지금쯤 일본열도에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4)

일본의 경험주의 교육은 이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식의 주입 -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개개 어린이의 개성과 창의력을 신장시키자던 교육이념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각종 학교의 입시제도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입시가 있고, 수험생이 줄어 고전하는 대학이 즐비한데도 대학 입시는 여전히 난관입니다. 수험성적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교수 방법은 주입 - 암기입니다. 남 얘기할 겨를이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만, 어떻게 일본의 경험주의 교육은 이렇게 이념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주 5 일제 수업의 실시과정에서 보듯이 토요일의 휴교가 과연 어린이의 여유 있는 생활, 개성 있는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일까?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

## 8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다. 쉬는 하루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학원에 간다고 했고, 혹은 집에서 텔레비전 게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시간을 함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타자와의 “관계”를 학습할 기회가 없는 곳에서 개성도 창의성도 육성될 수 없고, 민주적인 시민적 자질의 성숙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 5 일제 수업은 결국 국가의 교육비 지출을 절감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을 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유토리 교육 - 경험주의 교육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념과 실천의 괴리가 심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경험주의 교육이 이념적 차원에서나마 일본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동안은 유토리 교육에 관한 연구 성과도 꽤 많이 볼 수 있었고, 개성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 실천 보고도 많았습니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인격형성을 위한 실험적 실천, 국제화시대를 살아갈 지구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이 이어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교육의 분위기, 특히 시민교육의 방향은 우경화(右傾化)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교육과정(學習指導要領)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사회과의 해체였습니다. 시민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사회과를 이전의 역사·지리, 공민으로 분할해 버린 것입니다. 우경화된 국가주의 교육 체제 아래서 역사(특히 국사) 교육이 강화되는 현상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보아 온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 드렸습시다만 일본의 사회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인들에게 국수주의적 nationalism 교육을 주로 담당해 온 역사·지리·공민(수신)을 폐지하고, 민주 시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에 따라 도입한 것이 사회과였던 것입니다. 사회과는 GHQ(일본 점령 미군 사령부)의 강요로 도입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시민 교육으로서의 사회과의 본질이나 의의를 검토할 수 있는 지적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회과의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세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勝田守一, 1972, 戰後教育と社會科, 國土社 참조) 사회과는 경험주의 교육의 사자였고, 전후 일본의 교육적 전환의 상징으로서 하나의 교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회과가 해체되었다는 것은 일본 교육(특히 시민 교육)이 패전 이전의 국가주의로 회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과의 해체 이후에 전개되는 일련의 우경화 정책을 보더라도 제 생각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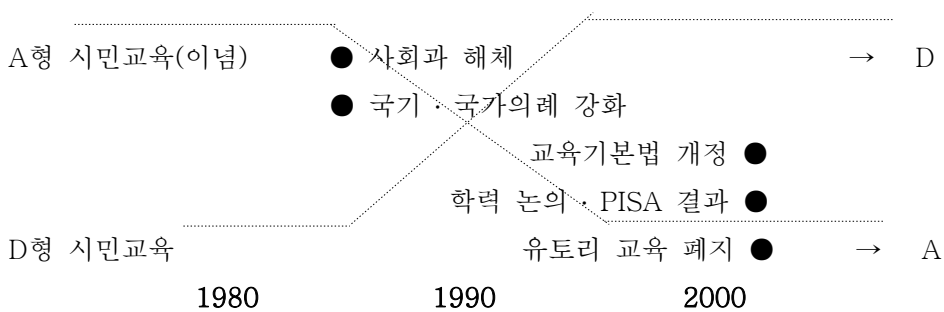


알 수 있습니다.

사회과 해체 이후 곧 국기·국가에 대한 강화된 의례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명문화되고, 그 의례에 소극적인 교사들이 징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6년에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전통문화의 존중과 향토애를 명시합니다. 향토애가 곧 훌륭한 전통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나라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우파들의 단순사고에서 나온 작품인 것입니다. 원래의 교육기본법은 개개 어린이의 발달을 최고의 교육 목표로 삼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인간 형성을 지향하는 진보적 교육이념이 담겨진 것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분명히 우경화된 국가주의 교육 이념의 법률적 표현입니다.

일본 교육의 우경화, 보수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학력 문제가 크게 거론되었고, 일본 어린이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PISA의 결과가 발표되자 중앙교육심의회(흔히 ‘中教審’이라고 부릅니다.)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관계 위원회, 단체가 유토리 교육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유토리 교육을 폐지하고 학력 위주의 교육으로 환원하게 됩니다. 전후 계속 이어온 진보적인 경험주의 교육 이념을 버리고 전전으로의 회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해오지도 않은 경험주의 - 유토리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혼하겠다는 얘기와 같은 해프닝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서 시민교육의 흐름도 바뀌어져 갔습니다.



## 10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이 시기에 왜 일본의 교육이 보수화, 우경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가는 제 전공 영역을 넘는 문제이고, 논의할 여유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보수화 · nationalism · 학력(지식) · 역사 교육 강화는 늘 한 세트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만을 상기해 두고 싶습니다.

어떻든 일본은 리버럴한 경험주의 교육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념적 차원에서 추구해 온 A형 시민교육도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학교교육이 “훌륭한” 시민을 육성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5)

학교에서 시민교육이 “훌륭한”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데 공헌하지 않았다면 세계를 감동시킨 극한 상황 속에서의 일본사람의 “훌륭한” 태도와 행동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이 의문의 답을 찾기 전에 먼저 “훌륭함”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3.11 재난에서 일본인들이 보인 “훌륭함”이란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체 ·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다, 즉 “…… 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약탈을 하지 않았다, 울부짖고, 고함치지 않았다, 지나친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 새치기하지 않았다, 정부나 토교전력을 포함하여 타인을 탓하고 공격하지 않았다…… 등등 “하지 않는” 점잖음을 “훌륭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가 칭찬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훌륭함”은 실은 D형 시민 교육에서 길러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에 해가 미칠지도 모르는 모든 행동을 참는, 하지 않는 소극적인, negative 한 자질을 길러온 것이 D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일본 학교에서의 시민교육과 일본들이 보인 태도, 행동은 훌륭하게 연결됩니다.

이러한 negative 한 시민교육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negative 한 행동양식, 사고방식은 일본문화라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었는지는 이 역시 저의 전공영역을 벗어나는 문제이지만 좀 건방을 떨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바깥세상과 잘 연락되지 않는 섬나라 안에서 제한된 재화를 나누면서 살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한된 재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전도 많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졌을 때는 섬 안에서도 더욱 고립된 산골짜

기로 도망을 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 화산 폭발, 산사태, 쓰나미 등 술한 자연재해와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명 공동체로서의 소속 집단의 중요성은 대단히 커지고 말았습니다. 소속 집단에 순종, 귀속(歸屬), 충성하는 것이 곧 사는 길이었습니다.

일본의 속담에 “튀어 나온 못은 두드려 맞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에의 순종, 귀속, 충성이란 우선 타인들과 늘 보조를 맞추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튀는 행동을 해서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그런 규칙을 어겼을 때는 여지없이 동네의 “왕따(村八分 - 무라하치부)” 가 됩니다. 동네의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하여, 즉 살기 위하여 늘 타인의 눈치를 보며, 타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처신을 해야 했습니다. 처신의 기본은 튀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하지 않는” D 형 교육 - 학습이 동네 안에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R. Benedict [『국화와 칼』(한국어판 제목)의 저자]가 일본 문화를 “부끄러움의 문화” 라고 한 것도 지금의 말씀과 같은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타인에게 부끄러운 짓을 안 하는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자연 앞에서도 전통적으로 “사림(遠慮 - 연료)” 이 최고의 미덕이 되어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연을 정복한다는 튀는 행동을 사리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공동 강의를 하고 있는 전 도쿄대학 교수 히라노[平野健一郎, 『국제문화학』(한국어판, 풀빛)저자]가 9.11이 테러와의 싸움이라면 3.11은 자연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싸움의 시작이라기 보다 불(원자력)을 훔친 인류에게 주어진 시지포스적인 쫓값(벌)의 지불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연(신) 앞에서 사리고 삼가해온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발전시켜온 과학 기술의 힘을 믿고 오만해진 결과가 초래한 재앙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움의 시작이라 하더라도 자연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우선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교육 - 학습 해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일본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조용히 기다리면서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6)

상상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한국에서 3.11 과 같은 재난이 일어난다

## 12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울부짖고, 고향을 치고, 가장 큰 목소리로 정부에 대한 요구와 불만을 퍼붓겠지요. 정부의 중요한 책임자가 현장을 지휘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뛰어다닐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운영해 온 도쿄전력과 같은 회사는 데모대에 점거된 상태일 것이고, 회사의 책임자는 과란 얼굴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상황과 이번 일본에서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상황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의 예상 상황에 눈살을 찌푸리고 일본 사람들의 조용하고 암전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진 자(haves) 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지 않는” 문화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가진 자로서의 시점에서 일본 사람들의 행동, 사고 양식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갖지 않은 자(haves nots)로서의 제 눈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소란한 시민들이 더 재미있게 비쳐집니다.

교육, 특히 시민교육은 순종과 귀속보다는 이탈과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발달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린이는 무한한 발달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선을 긋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순종과 귀속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한한 발달의 가능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근대교육의 한계는 국가 안에서의 순종과 귀속을 강요해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국민형성교육이 필요했겠지요. 모든 상황과 조건이 변화한 오늘날까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근대교육의 논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필요보다도 오히려 권력의 요구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순종과 귀속을 강조하는 교육은 “하지 않는” 시민을 양성할 것이고, 그 결과 “제도 피로(制度疲勞)” 현상이 일어나 국가의 활력 그 자체가 약해지지는 않을까요.

지진과 쓰나미가 있는 지 두 달이 넘는 지금, 일본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입니다. 절대로 안전하다고 큰소리를 치며 만든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정부·기업·학자들이 밀어붙인 발전소 건설이었습니다. 사고 후의 처리가 논의되면서 서서히 정부(권력)·기업(돈)·학자(기술)의 유착 관계가 마각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유착 관계가 유지된 채 사고처리가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일본은 3.11 보다 더 큰 불행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도 피로 현상입니다.

이런 유착을 허용한 것은 누구(무엇)입니까? 적어도 “하지 않는” 시민을 양성해온 교육이 면책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시민교육”은 지식의 옳고 그름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법 교육은 법률의 조문을 암기시키는 것이었고, 인권교육은 하나의 국민을 지향하는 동화(同化)의 설교였습니다. 튀는 개성은 타인에게 폐(迷惑 - 메이와쿠)를 끼치고, 자기주장은 집단의 화평(和 - 와)을 깨는 것이라고 일러왔습니다. 그리하여 “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켰고, 극한 상황에서도 조용하고 암전하게 행동하는 “훌륭한” 시민을 길러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엄청난 재해와 사고를 당해도 미지근한 대응밖에 하지 못하는 “하지 않는” 정부를 만들고 만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제도피로를 빨리 부른 것입니다.

제가 말이 짧은데다가 입이 거칠어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일본의 교육은 모두 엉터리이고, 일본 사람들은 “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안주하는 재미없는 인간들이다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교육 현장에는 한국에서 보기 힘들만큼 열심히 실천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대단히 부지런하게 일 “하고”, 의무 수행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엄청난 재해도 틀림없이 극복하고, 더 좋은 지역을 창출할 것입니다. 제 비판의 대상은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막아온 일본의 권력입니다. 그러한 권력 때문에 일본에는 구체적인 “시민”도 성숙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개개 시민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사회”도 형성되기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 않는” 미덕을 강요해 온 권력이 꾸며온 일본의 시민 교육을 탓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스스로 근대화, 민주화의 길을 찾아온 한국인들의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가진 자들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를 말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민 형성을 위한 시민 교육, 법 교육이 계속되어가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 주제 발표1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무부 현황 및 과제





[주제 발표1]

##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무부 현황 및 과제

손 영 배(법무부 법교육팀 검사)

- I. 서 론
- II. 법무부의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구축 현황
- III.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구축 과제

### I. 서 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지식, 가치 태도 등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법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근거법률이 「법교육지원법」인데, 법교육지원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교육의 목적이 바로 민주시민의 양성이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하여 법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 교육의 대상은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다. 민주시민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인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가져야는 중요한 자격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구성원의 연령, 활동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 18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한다. 민주시민의 영역에는 경제분야 역시 포함된다. 최근의 저축은행 비리사건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많은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볼수 있듯이 민주시민 교육은 우리나라의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른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도 연령, 직업 및 활동 영역별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다양한 형태로 해야하고, 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그 범위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교육지원법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만의 인력과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즉, 민주시민교육이 실효성 있게 전개되고,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효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는 기관별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콘텐츠, 전문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역할 분담을 하여 시스템이 구축되어 시스템에 의하여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법무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법교육지원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크게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몇가지 사업 추진현황을 언급하면서 향후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 II. 법무부의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구축 현황

### 1. 학교 법교육

학교 법교육이란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실시하는 모든 법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안에서는 사회, 도덕 등 교과목 및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부처 및 일부 민간기관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던 교과목 등은 입시 위주로 운영이 되었고, 교과서에 있는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평가하

기는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기관방문 등 일부 체험활동 또한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0년 11월 교과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자원 및 프로그램을 연계·공유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그 협의체에 법무부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2011년 정규교육과정으로 신설한 ‘창의적 체험활동’중의 일부 내용으로 연계되어 향후 대학입시의 입학사정관제와 연계하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에서는 학교 법교육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안점을 기관으로서는 교과부, 광역별 교육청, 인적 인프라로서는 장학사, 교사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 즉,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파트너로서 교과부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청 장학사, 교사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하여 일선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지도교사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학회 등 교육전문가 등과 함께 정확한 내용으로 교육효과가 우수한 교재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꼭 필요한 전문가 등 강사를 연계해 주며, 그러한 콘텐츠를 창의통합정보넷과 법교육팀 홈페이지 등으로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 가. 학생자치법정 등 시범학교 운영

법무부는 경미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에 대하여 동료학생들이 법정을 구성하여 교칙위반 학생에게 다양한 유형의 처벌을 내리면서 사법절차를 체득하고,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법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학생자치법정’, CA(Club Activity)시간을 활용한 법교육 프로그램인 ‘법 CA’ 등이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도록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에서 시범학교 지도교사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생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개최하고, 해당 프로그램 매뉴얼과 워크북과 법복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생자치법정은 2006년 5개교에서 실시된 이후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금년

## 20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에는 교과부 뿐만 아니라 시범교육청인 경남교육청과 연계하여 약 300개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민주시민의식을 작은 것부터 보다 어릴 때 갖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는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법교육 시범유치원도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금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나. 법교육 출장강연

초·중·고교에 변호사, 법대교수 등 법률전문가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법 원리와 가치, 맞춤형 법률지식 등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법무부와 대한 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총 73만명을 상대로 3,179회에 걸쳐 실시해 왔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전국의 학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요청하는 맞춤형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콘텐츠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년부터는 대검찰청과 연계하여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이 직접 학교에 출장 강연을 나갈 수 있도록 지역별로 각 검찰청과 강의시기 등을 조정하여 출장 강연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2010년 한해 동안 400개교를 상대로 실시한 출장강연을 금년 상반기에만 700개교를 상대로 실시할 수 있었다.

### 다. 모의재판대회, 생활법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및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생활법 경시대회를, 2006년부터 모의재판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는 중학생 대상 저작권 퀴즈대회, 생활법 퀴즈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회는 학생들이 즐기면서 딱딱한 법을 배우고,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을 만들 뿐 아니라 그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역 예선대회 및 본선대회 등을 위하여 지역 검찰청, 지방 변호사회, 지역 로스쿨 등과 연계하여 이러한 대회를 시스템으로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 라. 교사 직무연수 실시

교사들의 법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초·중·고교 교사들을 상대로 직무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작년부터 유치원 교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연수회수를 늘여 더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과부, 광역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장학사, 생활지도교사들이 학생지도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 창의적 체험활동에 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과부 뿐만 아니라 광역 교육청 단위별로 장학사,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마련해서 시스템으로 정착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2. 사회 법교육

사회 법교육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교육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 학생 및 청소년은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민주시민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추상적인 민주시민교육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교육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 법교육은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지키지 않는 것이 손해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직업별 협회, 공익성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가. 시민법률콘서트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유용한 법률 강의를 하고, 클래식, 대중가요 등 다양한 소규모 문화공연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 22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현재 법무부에서는 대한변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2005년부터 18회에 걸쳐 실시하여 약 10,000명이 참가 하였다. 시민법률콘서트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금년부터 경기도, 제주도 등 광역 지자체와 연계하여 기초 지자체의 교육 수요를 취합하게 하고, 그 수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 나. 솔로몬 로파크 운영

법무부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연수·체험 시설로서 ‘솔로몬 로파크’를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다. 솔로몬 로파크는 2008년 개관이후 약 40만명 이상이 방문하였다. 체험관의 다양한 코너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연수관의 각종 캠프, 워크숍, 연수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 상대 교육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주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의 증추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재 법무부와 부산시, 부산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동남권 법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산에 ‘솔로몬 로파크’ 신축을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 다. 각종 법교육 콘텐츠 개발

법무부에서는 ‘청소년의 법과 생활’, ‘한국인의 법과생활’, ‘손오공 무법소탕기’, ‘엄마는 보디가드’ 등 초·중·고교 학생대상 법교육 교재는 물론 일반인을 위한 생활법률 교재 및 생활법률 관련 가이드북, 전문 강사를 위한 법교육 강의자료 등 44종의 교재 약 682,950부를 개발, 보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작년과 금년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법아 놀자’(20만건 다운로드), ‘법아 알려줘’(10만건 다운로드) 등 다양한 형식의 법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새로운 맞춤형 교재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정확하면서도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효과가 높은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역할이 법무부와 자녀안심학교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해당 콘텐츠

츠와 관련된 교과부 등 관련 유관기관에 감수를 받을 뿐 아니라 더욱더 많은 교육 전문가와 관련기관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콘텐츠 제공 범위를 넓혀 콘텐츠 제작과 배포에 있어서도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 라. 민간기관 연계 법교육 실시

법무부에서는 2010년부터 농협 중앙회와 연계하여 각 지역별 농협별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교육을 시작하였고, 축구협회와 연계하여 축구감독, 축구심판에 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각종 직업별 협회와 공익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시민 법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3. 법교육 담당 부서의 확대

법무부는 2004년 정책위원회에서 법교육 사업 추진을 결의함으로써 법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2008년에는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법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공정사회 구현 등 민주시민의식, 법치주의 국가 실현 등에 대한 중요성 증대됨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 5월 4일 관련부서의 통합을 통하여 기존 8명으로 구성된 법교육팀의 인력을 약 20명까지 증원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법질서선진화'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법무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시스템 구축을 앞으로 더 활발히 추진할 것이다.

## Ⅲ. 민주시민교육 시스템 구축 과제

### 1. 민간기관과의 시스템 확대

우리나라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무부가 법교육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교육, 통일교육 등에 비해 각종 협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 24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법무부에서는 민간기관들이 좀 더 주축이 되어서 다양한 법교육 활동들에 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변호사협회, 공익성 민간단체 등이 민주시민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법무부 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이 미국과 일본의 예와 같이 민간기관 주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민간기관들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시스템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법무부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민간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2.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증액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민간기관의 시스템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4년 민간단체인 시민교육센터가 미국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만 약 2,500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법교육 예산이 연간 총 12억원(법교육팀 5억원, 솔로몬로파크 7억원)<sup>1)</sup>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교육을 위한 여러 종류의 교재 등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학교 및 교육청, 지자체, 시민단체들 중에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고, 민간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결국, 기획재정부, 국회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인 법교육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나, 이에 대하여는 관련 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공감대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됨으로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1) 통일부의 통일교육(80억), 기재부의 경제교육(86억)의 예산으로 민간단체 및 지방단체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주제 발표2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초등 법교육 실천 방안



[주제 발표2]

##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초등 법교육 실천 방안

김 다 현(한국법교육센터 연구원)

- I. 들어가며
- II. 초등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석
- III.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초등 법교육 프로그램
- IV. 결론
- \* 참고문헌

### I. 들어가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으로 법교육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요구받게 되었다. 학교별, 학급별로 아이들의 창의적 시민성 계발을 위해 고안되었다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여타 다른 교육에 비해 교육목적에 있어 법교육과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은 법교육이 잘 고민되어져 적용될 때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목적이기에 이제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이 수월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법교육의 내용, 요소 등을 되짚고 다시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의 의미, 법교육 모델 등에 대한 고민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있어 왔지만 실제 적용상에서 초등학교에서의 법교육 또는 외부기관을 통한 초등학생에 대한 법교육이 여러 고민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졌었는지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자율활동 시간이 장시간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법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지금부터 현재 초등학생을 위한 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좀 더 발전적인 법교육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수정·보완의 필요가 있을 터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되어야 할 지 고민해보도록 한다.

## II. 초등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석

현재까지 이루어진 초등 법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교과 속에서 구현된 법교육과 외부 기관의 참여 및 활동에 의한 외부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과 수업과 별개로 독자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이 시점에서는 사회과 교과서의 활용 차원보다 좀 더 확장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마련되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발전 모형을 모색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사용하여 기존 보다 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sup>1)</sup> 한정된 시간 속에 법교육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효율적일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먼저,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1. 현재의 초등 법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 1) 초등 법교육의 주제와 내용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법교육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들은 현장에 맞게 시간과 내용이 재구성 되고 있으나 대영역으로 보면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

1) 창의적 체험활동이 기존 재량활동 보다 더 확대됨으로써 법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 실제 학교 적용상에서 법교육‘만’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학교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된다면 다른 교육활동보다 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주제        | 세부 내용   |
|-----------|---|
| 법에 대한 관심  |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말하는 수업                              |
| 생활과 법     | 생활 속 다양한 법적 사례를 다루고 자신의 권리와 피해에 대한 구제 등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수업 |
| 재판에 대한 이해 | 모의재판을 통해 재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형사절차 등을 알아가는 수업                               |

학교에서 교과와 접목하여 활용되는 여러 내용 요소는 분명 다양할 것이다. 다만 독자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의 영역은 위에서 보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영역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수업이 구성되고 프로그램의 수는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독자적인 법교육 수업을 하기에는 교육 과정상의 문제와 더불어 교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장기적인 목표 아래 단계별 법교육 수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시수가 생김으로써 다시 한번 법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운영될 수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교수하고 교육 대상자들에게 학습하게 할 것인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現 초등 법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및 발전 방향

### ① 법에 대한 이해

초등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성인에게도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 현재에도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요, 법이라는 제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겨를도 경험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생소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물론 법학을

## 30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공부했다 하더라도 전공에 따라또한 법학의 특성상 체계와 논리 정립에 신경을 쓰느라 우리 삶과 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답을 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법의 이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행동양식을 결정해 준다. 법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쌓이는 법에 대한 신뢰와 법감정들은 사소하게는 교통질서 준수에, 성인이 되어서는 선거 참여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며 삶을 이끌어어나가게 된다.

이렇듯 법에 대한 이해는 법교육이 상징하는 민주 시민성의 하나이며 이러한 의식과 사고는 한 번의 수업으로는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인해 법이라는 것이 왜 우리의 삶과 긴밀히 연관될 수 밖에 없는지를 알게 해야 하며 ‘법’ 그 자체가 발전되어온 역사 등을 체험하고 공부하며 현재의 법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2)</sup>.

### ② 생활과 법

아이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법교육을 장시간 할 수 있는 흥미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피해와 분쟁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교육 내용일 것이다.

학교에서 법과사회 과목이 독립되고 법교육이 독자적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여러 연구자들이 힘써온 부분이 생활법 영역이다. 이러한 생활법 영역의 법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로 이미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어 생활법 영역 프로그램의 발전적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sup>3)</sup>.

### ③ 모의재판

미국 법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중추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 법교육 현장속에서도 모의재판은 법교육 프로그램의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모의재판 수업은 학생들에게 형사절차와 재판을 경험케 함으로써

---

2) 법은 역사적, 시간적 산물이기도 하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공통성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이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에 ‘자신의 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에는 법의 상징물, 여러나라의 다양한 역사 등이 내용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물론, 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세부 주제를 가진 강의안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생활법 영역의 세분화 이상의 것은 아닐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재판 속에서 완성되는 법을 보며 법 자체에 대한 신뢰 및 법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그런데 실제 모의재판 수업의 적용 시 이러한 모의재판의 목표가 잘 구현되는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현장에서 모의재판 수업을 할 때에는 시간의 한계, 장소적 한계, 교사 준비의 한계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역할을 정하고 시나리오를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법교육 대표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모의재판 수업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생김으로써 모의재판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시간적 상황이 도래하였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모의재판이 추구하는 바를 되짚어 보고 모의재판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모의재판도 다양한 형식으로 재편할 수 있고 한 시간이 아닌 여러 시간을 통해 모의재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의재판 수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프로그램형: 시나리오 형식이 아닌 한반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고 함께 판결해 보는 방식.법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보며 각각의 이익을 조율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음

- 재판관 경험형 : 주어진 시나리오를 통해 일부 어린이가 모의재판 역할극을 하고 최종 결론을 토의를 통해 내려보는 수업. 일부지만 실제 참여 학생들은 재판 참여자들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직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됨.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최종 판결을 함께 내려봄으로써 실제 법적용 경험 및 재판,법에 대한 신뢰가 고취될 수 있음

- 재판 준비형 : 처음부터 사건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재판을 꾸려가는 프로그램 양식. 교사는 재판의 절차 등 개략적인 것을 이끌어 주고 세부적인 내용은 학생들이 채워나가도록 함. 이를 위해서는 형사 소송 및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학생들은 검사 모뎀, 재판관 모뎀, 변호인 모뎀 등을 나누어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도록 함. 자신이 속한 모뎀의 역할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교사의 지도가 다른 형식보다 더 투입되어야 함.

### Ⅲ.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초등 법교육 프로그램

지금 현재 활용되는 법교육의 대영역 또는 프로그램을 살펴 보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하기 위한 수정·보완의 방향에 대해 간단히 논하였다. 지금 부터는 현재의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으로 변화된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할 법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1. 법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

이제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법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아 여러 법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려 없이 수업을 계획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으로 법교육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그 시간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기상황이 도래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법교육의 내용을 어떠한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할 것이다.<sup>4)</sup>

법교육에 주어진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에 우리는 일련의 시간 속에 어떠한 순서로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 학습 내용을 조직하게 된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바 이제까지의 법교육 경험을 토대로 생각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① 제 1단계 : 법에 대한 흥미 고취

법교육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법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 것이라 생각 된다. 모든 수업에서 수업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당연한 교수-학습 방법이겠지만 법교육에서는 좀 더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을 배움에 있어 어렵거나 딱딱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을 깨는 것이 앞으로의 법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수업의 목

4) 물론 모든 시간을 법교육에 쓸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법교육이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그 교육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의 계획 또는 단계를 설정하고는 있어야 할 것이다.



적을 달성하는 성패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단순한 흥미 고취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법교육 수업이 수월하고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법적 개념 및 단어 등 언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의 상징물, 권리 쟁취의 역사, 법과 관련된 기관 및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② 제 2단계 : 개인과 법

법에 대한 개념과 기관, 사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준비가 되면 바로 학생들의 생활속에서 법을 찾도록 한다. 이전 수업에서 배웠던 여러 법적 개념이 내 생활에서 발견됨을 느끼도록 하고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이익 또는 개인과 기업 등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례 등을 만나면서 법이 각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 속에서 법을 통해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인식, 즉 법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일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 3단계 : 갈등 해결 - 헌법교육

성인이 되어 나 자신을 떠나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를 지나 중등과정을 마치기 전까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가지는 여러 이익에 따라 가지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국가라는 배를 움직이기 위해 알게 모르게 나의 생각을 투입하고 법이라는 산출물에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우리는 항상 타인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나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이며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 결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인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공동체 속에서 이익이 충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그것의 해법으로 헌법교육이 있을 것이다. 헌법교육은 정치적 시민을 상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알아가는 교육이다. 즉, 헌법을 정채되어 있는 것, 상위에서 하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결정으로 구체화 되는 산물이라고 느끼게끔 조직하는 것이 헌법교육인 것이다.

이때 중요한 헌법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은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익 충돌(기본권 충돌 또는 기본권 제한 문제)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결정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항상 다수만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경험케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상황 속에서도 기본권과 이익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 나의 생활 속에 다양한 법들이 구체화 됨을 느낀 후 그 법을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크게 확장하여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는 헌법교육이야말로 초등 법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초등 헌법교육은 헌법재판소 사례를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사례를 통해 세부적인 기본권 및 헌법의 정신, 법령의 내용 등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헌법을 바라보는 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 ④ 제 4단계 : 국가와 법

앞선 3단계 수업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다루어 볼 것이 바로 국가기관, 국가 권력이다.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으며 초등 뿐만 아니라 중등 교육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다시피 현재의 사회과 교과에서는 단편적인 국가기관의 역할 및 권한 등을 나열하고 그것을 학습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의 당부당을 떠나 3단계까지의 수업을 마치고 나면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증진을 위해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에게 권한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자신들이 국가권력의 감시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선거교육, 입법체험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국가 권력의 원천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이 달라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2.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법교육 운영을 위한 준비

창의적 체험활동의 등장은 법교육의 다른 도전을 요청하고 있다. 좀 더 다양한 방법과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그만큼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법교육 프로그램 등에 의존할 수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연구·개발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적극적으로 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 법교육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적합한 영역임을 이해시키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며 두 번째로 교사가 스스로 역할을 하고 수업을 수월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아닌 그 프로그램을 교사 또는 강사가 변형하여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연수 등의 강화로 학교에서의 법교육의 나무를 단단히 심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시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초등 법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법교육 프로그램의 모습과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까지 법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학교에서의 법교육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들이 조직되고 개발되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독립된 교과목과 같은 성질의 시간 동안 법교육을 어떠한 흐름으로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려워하고 배우기 좋아하지 않는 ‘법’교육의 편견을 깨고 미래의 사회 구성원인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삶속에서의 법을 느끼고 체험하고 더 나아가 국가 권력이 바로 ‘나’에게서 나온다는 교육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며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유의미한 교육경험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나에게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답을 구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아이들은 성장하고 우리나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를 하면서 좀 더 세밀한 법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발전적 연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전보다 좀 더 장기적인 법교육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법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곽한영·이정우(2007). 초등학생들의 사회 교과서 어휘에 대한 이해도: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 구정화(2006). 초등 사회과 토론수업을 위한 교사 매뉴얼 개발 시 고려사항  
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시민교육연구 제38권 4호
- 김다현(2008). 헌법의 양면성에 따른 헌법교육의 본질 -독일의 헌법관 논의  
를 토대로-. 법교육 연구 제3권 제1호
- 김현철(2009).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법교육 연구 제4권 제1호

# 주제 발표3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 실천 방안



[주제 발표3]

##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 실천 방안

정 상 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법학박사)

- I. 서론
- II. 창의적 체험활동과 중등 법교육
- III.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의 방법론과 유형
- IV.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의 실천과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 V. 결론

### I. 서론

창의·인성교육은 종래의 입시위주, 경쟁 중심의 수업 방식을 전환하여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요소들을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2009 개정교육과정과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2010. 1)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본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의 하나의 실천 방안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재 중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주당 평균 4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교과시간으로 2시간, 학급활동과 클럽활동 등 2시간(이 경우 격주 토요일에 4시간)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교과시간에는 해당 교과 선생님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고 각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에서의 인식은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과 외 활동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활동 시 수나 이수단위를 고려한다면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의 교과목화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1)</sup> 그런데 정형화된 교과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용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사실이지만, 교사들의 교과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도울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마련될 필요도 있게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과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라도, 창의적 체험활동은 앞으로 비교과활동으로 대학교 입학에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입학사정관 제도와 결합) 불가피하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준비해 주기 위한 사교육이 벌써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각 대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명목으로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바람직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의 마련과 보급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시점과 결부되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교육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글에서 그러한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중등 법교육의 활용 필요성과 가능성이 크기에 양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의 의미와 방법론과 유형, 실천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창의적 체험활동과 중등 법교육

### 1. 창의적 체험활동의 의미와 목표

변화하는 미래 시대에 대한 전망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미래 인재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게 되었다. 미래인재는 ‘창의성’과 ‘인성’을 함께 갖춘 인간상을 요구한다. 모든 교육에 있어서 창의성과 인성이 요구되는 것은 과거에도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입시와 대학이라는 현실에서 창의와 인성이 무시되었다는 반성 아래 창의인성교육을 보다 강조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창의성과 인성의 중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하고, 강조되어야 하기 이전에 이미 원칙으로 자리잡고 실천되고 있었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은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

1)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적용되어,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행 중이며, 2013년 전학년에 걸쳐 시행된다. 중학교의 경우 3년에 306시간은 전체 수업시간의 9%에 해당한다.



### [주제 발표3]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중등 법교육 실천 방안 · 41

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말한다.<sup>2)</sup> 이들에 의하면 창의성(creativity)은 독창적이면서도 유용한 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정의되며, 창의적 사람은 인지적, 정의적, 동기적 요소를 적절히 조화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그리고 인성(character)이란 상호 신뢰하며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생활태도와 품성을 이르는 말이다. 나아가 창의성과 인성은 구성요소나 함양방법 등에 있어 상호유사성과 보완성이 높은 자질(예: 개방성, 적극성, 협동능력 등)로 구성된다.

나아가 창의인성 교육은 학생의 지위를 교육의 객체에서 학습의 주체를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창의인성 교육의 결과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발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의인성 교육은 일반 교과에서도 각 교과의 내용과 특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창의인성 수업의 모형이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사실상 '새로운 교과'가 되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이러한 우려를 뛰어 넘어 기존 교과의 학습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실 창의 인성 교육은 기존의 교과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사실상 하나의 새로운 교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재량 활동을 활성화하고 강화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재량활동이 교과가 되면서 재량활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재량활동을 입학사정관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 이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비이성적 입시와 맞물려 또 하나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과로 전락될 위험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유익하고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법교육은 어떠한 모습으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은 학생을 학습의 주체로 인식하고 스스로 법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법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교육의 목표가 여전히 유

2) 문용린·최인수(2010) “창의·인성교육의 총론: 학교급별 교과별 창의·인성교육의 실제”, 『미래 인성 교육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의 방향』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주관 심포지움 자료집.

효하겠지만,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헌법교육이든 생활법교육이든 법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통한 법적 사고 능력의 개발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문화 형성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sup>3)</sup>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실천적인 법교육)을 통해서 의미있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은 입시에 대비한 법교육 모델에서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법교육 모델로 과감히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2.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법교육의 모델

그렇다면 현재 법교육의 현실에 비추어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의 모델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종래의 ‘법과 사회’ 교과에서도 목표의 혼선이 있었다. 생활법 중심인가 아니면 법학 교육인가의 갈등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법과 사회가 공동체 내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교육의 일환이며 법적 사고의 체득을 위해서 체험적으로 교육되어야 함에도, 법과 사회 교과에서는 시험과 연계된 개념 중심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노출하였다.<sup>4)</sup> 따라서 법과 사회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학습되어야 할 내용들이 오히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법교육의 모델은 법교육의 의미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데, 법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 곽한영(2006)은 법교육(Low-Related Education)의 의미를 법학교육(Law Education)과의 비교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법학교육이 법적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라면, 법교육은 법적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결과정을 신뢰하는 법적 사고방식을 지닌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교육과는 달리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은 학생들에게

3)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현행 중등 법교육 일반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전제철(2010). 초중등 사회과 법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 법교육연구 제5권 제1호, pp. 133-158; 조우영(2010). 중등학교 법 교육의 방향과 목표 재설정을 위한 시론, 법교육연구 제5권 제1호, pp. 159-182.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지식·태도·가치관 등을 개발할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법 태도를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사례중심 법교육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사례를 활용한 법교육 방법에 관한 논의들은 법적 문제 해결력 향상 및 법적 개념 습득에 유리하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학습법을 통해 학습자를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본연의 학습 목표와는 다른 학습 방향이 전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학습자는 교사가 제공한 문제를 학습 범위 안에 정해진 법 내용 안에서 해결하게 되며, 이런 학습 과정은 학습자의 경험을 자칫 판사의 역할에 한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과정과 제도형성 과정 등을 통해 사회 제도가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이전에 인권 의식의 고양, 법의식의 선진화, 공동체 의식의 함양 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문제 인식 능력을 키우고 법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어진 사례를 주어진 법을 통해 해결해보는 학습과정은 학습자에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제도가 형성된 과정을 이해시키고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에는 부족한 단편적인 경험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역할이 수동적인 영역에서 그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학습자는 자신이 문제의식을 갖고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자가 선정한 사례에 대해 고민하게 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또한 교수자가 제시해 준 법 내용에 한정되어 기존의 법 개념을 도구화할 뿐이다.

이렇게 현실에서의 법교육은 학습자에게 기존의 법률을 가르쳐주고, 특정 사례를 제시한 후 미리 배운 법률 내용을 통해 해결해 보도록 하는 학습과정 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과정의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해보고 우리 사회 문제를 고민해 볼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교육 모델의 전환이 필요한 한편,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 3. 소결

법교육의 모델은 법을 먼저 알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교육을 위한 창의체험활동이 법적 지식을 전제로 한 것일 필요는 없다. 우리 일상 모든 생활에서 ‘법’을 찾아낼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 Ⅲ.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의 방법론과 유형

#### 1. 방법론의 기초

##### 1) 목표 설정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을 전제로 본래 법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목적은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감수성,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확인, 법의 기능과 가치 및 태도의 바른 인식과 지적 함양을 통해 법적 소양을 갖추고 유능한 민주 시민이 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프로그램 마련시 법제도 및 질서의 운영실태 등 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법제도에 대한 태도 및 가치 명료화,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이 스스로 체득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체험활동 중심의 비공식 교육과정과 내용이 개발되고, 교수전략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함께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최윤진·김윤나, 2006: 4).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성상 한정된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담보다는 학습자 스스로의 목표설정과 스스로의 프로그램 선택을 우선시 하고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생활을 스스로 탐구하여 직접 실천 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2)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속성에서 학생의 필요와 법교육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선 창의적 개발을 위한 창의적 사고 기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창의적 사고 기법은 보통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에서 달성될 수 있다고 한

다. 확산적 사고는 더욱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사고기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스캅 퍼, 육색사고모기법 등을 든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은 헌법교육 이든 생활법교육이든 어떠한 범영역이든 간에 학생들의 사고를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해결 방법에서 법적인 사고를 유도하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해결 과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렴적 사고는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다듬어 선택하는 사고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라이팅 기법, PMI 기법, P-P-C 기법, 평가행렬법, 쌍비교 분석법 등을 쓸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 역시 법교육에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원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성 요소를 법교육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의, 공정, 질서, 책임, 약속, 정직 등의 인성 요소를 법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사례 해결에 있어서 이러한 인성적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법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로 창의적 체험활동 과정에서 법교육 중심의 내용에 참여하는 학생은 법교육에 관한 관심과 사전지식이 있고 관심도도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교육을 위한 창의체험활동의 유형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반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sup>5)</sup>

## 2. 자율활동

자율활동은 학급이나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드높여 바람직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자율활동은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으로 구분된다. 자율활동은 그 유형이 다양하여 법교육 방법을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학교 내 활동을 통해 법적 문제를 발견해 내고, 교우들과 함께 법을 만들어 가며 법

5) 다만 이러한 분류는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따라 서로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류 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46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들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 영역 가운데 현실에서 규범적 해결 방안이 필요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현실과 규범의 갈등 사례들을 찾아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법교육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 1) 적응활동

학교 내에서는 선도활동을 통한 법교육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활동의 목표를 법교육의 이념에 맞게 수정하여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규범의 집행이 아니라 규범에 대한 인식과 재평가, 규범의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교우 등의 상담활동을 통한 법적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한 법교육이 가능하다.

### 2) 자치활동

학생회 활동은 정치 영역의 창의체험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헌법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각 학급에서 교실헌법을 작성할 수도 있다.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론을 하고 규범을 만드는 작업이 하나의 법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학생 인권의 차원에서 자치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 3) 행사활동

생활법경시대회, 법캠프, 생활법 연수 프로그램, 법체험관 등 참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들이 확대되고 다양해지며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의 프로그램도 창의체험활동의 방법론에 부합하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4) 기타

자율적인 독서활동이나 가족 단위의 활동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지만 동아리활동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3.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의 관심사와 동일한 취미, 특기, 재능 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해 내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는 집단활동이다. 동아리활동은 크게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법교육과 관련해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치법정, 영화 또는 드라마를 활용한 법교육, 독서를 활용한 법교육 등을 제안할 수 있겠다.

#### 1) 자치법정/모의재판/모의국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장 유용하게 채택할 수 있는 창의체험활동은 자치법정, 모의재판, 모의국회 등이다. 실제 사례들을 자신의 창의인성 교육 방식에 따라 법적 인식 능력과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이 되는 사례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 오는 과정을 통해 교사가 지도할 수 있고, 여러 사례들을 교사들이 제시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사실 관계를 탐구하고 여러 사회 문제의 양상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는 능력을 키워 줄 수도 있다. 모의재판에는 가능하면 주변 지역 사회의 법조인을 초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모의국회도 정치교육 또는 헌법교육의 하나로만 간주할 필요는 없다. 우리 사회 현실에 따라 필요한 정책들을 국민의 대표들이 ‘약속’을 통하여 ‘법률’로 ‘디자인’하는 과정은 하나의 중요한 법교육이 된다. 생활법도 사실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역사적 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법제도적 노력을 굳이 헌법교육과 생활법으로 엄격히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법교육의 중요한 체험활동이 될 것이다.

#### 2) 영화/드라마를 활용한 창의체험활동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상호 작용 속에 사람들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속에서 대부분 법적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학생들은 개인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 48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법적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법 교육은 주로 법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뤄왔다. 때문에 대안적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영상 매체인 영화를 통한 법교육이 필요하다.

영화를 활용한 수업은 추상적 내용의 법적 개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영화 속 사례를 분석하여 법적 사실과 쟁점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법적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다만 생활법에 관한 영화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고, 형사 문제에 관한 영화는 선정적이고 과장적이기 쉬워 영화 선택의 한계가 있기는 하다. 외국의 법정 영화들은 우리의 법체계와 다소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활용한 법교육을 반드시 법정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소재를 영화로 한 경우에도 이를 법교육의 소재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절실하다.

### 3) 독서 또는 신문기사 등을 활용한 창의체험활동

정의에 관한 사례, 전통적으로 사회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거나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 법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도서들이 추천되어야 한다. 이미 법과 문학에 관해서는 여러 안내 도서가 있어 교사의 관심만으로도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신문기사 등을 활용한 창의체험활동이 가능한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제도적, 법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반드시 법적 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답사례, 사회문제 등을 수집하면서 그것을 정의와 형평의 관점, 질서 유지의 관점, 공익 달성을 위한 관점, 당사자 형평의 관점, 비례의 원칙, 논리와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 등을 동원하면 법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유용한 창의체험활동이 될 것이다.

교사의 지도가 가능하다면 보다 본격적으로 법으로 인한 불편 사례 수집, 생활 문제 가운데 법적 분쟁 사례를 모아 생활법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활동도 가능하다.

### 4) 인권 관련 동아리 운영: 그 외 저작권, 사이버 윤리, 다문화사회 관련 등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 운영에서 법교육 실천이 가능함



#### 4.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된 인격을 함양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봉사활동은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단체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지속적인 활동이다. 봉사활동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봉사활동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법교육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법지식 습득의 범주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보다는 사회공동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공평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해하며 상호 신뢰와 경쟁, 민주적 합의 과정과 법치주의 등 국가구조적 원리를 이해하고 봉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법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의 장소와 방법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경찰서(학교 근처 순찰), 학교폭력방지활동, 지방의회 또는 공공기관 민원처리 사무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법교육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이 법기관에서의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나서 여기에서 느낀 점을 법적 관점에서 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법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인권이 열악한 지역에서나 소외계층 등에 대하여 인권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5. 진로활동

진로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대해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진로활동 분야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보다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관련 기관의 방문,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제안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진로활동은 학생 개인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50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1) 법 관련 기관 방문

최근에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방문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프로그램화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관련 기관을 활용하는 창의체험활동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법 관련 기관 방문시에는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사전에 조사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단순히 투어 중심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방문의 목적과 학생들의 수준, 필요한 사항, 질문의 요지들을 미리 알려주어 그에 적절한 안내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짧은 강의나 강연이 준비되는 경우 지도교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능하면 교과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의 성격이나 역할,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보도록 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고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의 학습을 통해 갖게 된 문제의식을 방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수업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의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재판 방청에 있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방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방문 수업 자체가 어려울 경우 또는 방문 전후에 수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변론동영상이나 영상회의록 등을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다섯째, 법 관련 기관의 범위도 사법부 중심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각급 법원과 검찰, 경찰청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법제처, 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 관련 기관의 방문 수업은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의 재학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학기마다 계획을 세워 다양한 법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들 단체가 단체 차원에서 재능기부가 되고 학생들에게는 창의체험활동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학회와 학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도표 1> 방문프로그램 예시: 대한법률구조공단<sup>6)</sup>

| 시간    | 프로그램        | 비고   |
|-------|-------------|------|
| 14:00 | 공단 청사(본부)   | 개별도착 |
| 14:00 | 참석자 및 공단 소개 | 대회의실 |

6)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92>

|                     |  |  |
|---------------------|--|--|
| ~<br>15:00          | 홍보 동영상 시청<br>법률퀴즈 등 참여프로그램   | 진행 : 홍보실   |
| 15:00<br>~<br>15:30 | 본부 및 서울중앙지부 견학<br>- 구조 1, 2, 3팀<br>- 사이버상담팀<br>- 132 법률상담센터<br>- 기념품 증정 및 사진촬영 | 진행 : 홍보실, 구조총괄팀 등 각<br>팀 지원<br>※어른 및 봉사활동에 참가하지<br>않는 참가자<br>행사 종료 |
| 15:30<br>~          | 청소년 봉사활동(민원안내, 자료정리<br>등)  | 대상 : 청소년 참가자 중 희망자<br>에 한함<br>진행 : 홍보실, 서울중앙지부 구<br>조 1팀           |

2) 로스쿨 방문 수업 또는 직업활동 체험

진로 활동 가운데 유용한 방법은 해당 직업군의 역할을 조사하거나 취재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최근 법학교육의 변화에 따라 로스쿨 또는 법과대학을 방문하는 것도 진로활동의 예가 될 수 있다. 방문시에는 재학생 면담과 교수 등과의 면담 등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의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학회나 학교 차원의 공동의 프로그램 마련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직업 활동 체험

직업 활동 체험은 진로활동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법교육 관련 기관을 확대해서 인식해야 하는 점과 마찬가지로 법교육과 관련된 직업도 보다 다양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판검사나 변호사 외에 국회의원, 지방의회, 공무원이나 경찰직,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에 대한 다양한 직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본래 의미에 맞게 확대된다면, 변호사라는 직역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술한 로스쿨 방문 수업 등을 통해 간접적인 직업 활동의 체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학원생이나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 52 · 2011 춘계(통산 9차) 학술 발표회 자료집

전술한 법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이나 인턴 활동 등을 통한 체험활동도 가능할 것이지만, 개별적인 체험활동은 자율활동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교육의 관점을 법적 문제의 해결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문제를 인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확대된 관점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 4) 법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또는 면담 등

실제 법 관련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의 창의체험활동을 통해 진로활동을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법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강연 또는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하는 방법이다. 개별적인 초청에는 예산이나 일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의 법 관련 기관에서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를 활용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재능 기부를 원하는 지원자가 있는 경우, 학부모 가운데 초청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물론 법 관련 전문가는 관검사와 변호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표 2> 창의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의 실천 방안

|           | 성격 및 활동  | 법교육에서 실천 방안   |
|-----------|--|---|
| 자율<br>활동  |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br>- 적응활동      - 자치활동<br>- 행사활동      - 창의적 특색활동 등                | - 학교 내 선도활동, 교우 상담 활동<br>- 학생회 자치활동(학생경찰, 학급회의, 교우 등 상담활동)<br>-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제작, 참여, 관찰 등<br>- 생활법경시대회, 법캠프, 생활법 연수 프로그램, 법체험관 참여 등  |
| 동아리<br>활동 |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한다.<br>- 학술활동      - 문화예술활동<br>- 스포츠활동      - 실습노작활동<br>- 청소년단체활동 등 | - 자치법정, 모의재판, 모의국회<br>- 영화, 드라마를 활용한 활동<br>- 독서, 신문기사 등을 활용한 활동<br>- 인권 관련 동아리 운영   |
| 봉사<br>활동  | 학생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br>- 교내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br>- 자연환경 보호활동<br>- 캠페인 활동 등            | - 법 관련 기관 봉사활동<br>- 학교 근처 순찰, 학교폭력 방지 활동<br>- 지방의회 등 민원처리 사무실 봉사활동<br>- 인권 관련 단체 봉사활동에 참여   |
| 진로<br>활동  | 학생은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 계발 활동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br>- 자기이해활동      - 진로정보 탐색활동<br>- 진로계획활동      - 진로체험활동 등        | - 법 관련 기관 방문: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법 관련 연구 기관 등<br>- 로스쿨, 대학 관련 학과 등과 연계<br>- 직업활동 체험<br>- 법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법조인 외 확대 필요, 법학 및 법교육 교수, 법무사, 경찰관, 변호사, 공무원 등 |

## IV.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의 실천 과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 1. 창의적 체험활동의 방법론 준수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지식의 습득에서 나아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실천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인성을 배양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집단활동의 성격을 갖게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학생의 특성과 형편, 그리고 학교의 특성과 상황, 지역사회 특성과 요구에 맞게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중등학교에서는 자아 발견과 확립, 공동체 내에서의 삶의 태도 확립, 인간관계의 형성, 자아실현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구 등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 중심, 실천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과 학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를 할 수 있으나 내용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즉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을 제공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학습 내용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III에서 제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의 유형과 사례들은 개인적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로 몇 개씩을 구성하여 학기 단위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다. 부분적으로 동아리활동 등 집단적 활동이 있을 수 있지만, 각 집단적 활동에 대한 참여도 개인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률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은 창의인성 교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양식은 영역에 따라 주제를 정한 후, 해당 프로그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 창의인성 요소를 확인하고 활용자원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목적과 프로그램의 순서(흐름도), 학습의 내용(쟁점)을 구체화하고 학

생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 2. 지도 교사 양성

법교육이나 인권교육의 한계와 과제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창의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에서도 여전히 과제로 남는 것은 지도 교사의 역량 문제이다. 법교육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교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창의인성 교육 모델을 통한 법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은 더욱 요원한 과제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인권교육이 특히 유효할 수 있는데, 인권교육을 담당할 교사나 교사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이대성, 2008: 81면 이하). 지도 교사의 역량이 증대되지 않으면 방문 수업 등 모든 수업이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으로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법학 또는 법교육을 일정 수준 이수한 교사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사범대학 법교육 교수의 현황도 마찬가지이다(전제철, 2010:). 따라서 지도 교사의 양성 문제는 창의인성교육에 앞서 법교육에서부터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범대학 또는 교사 연수과정에서의 법교육 방법론도 법학개론의 심화 학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범대학과 사회과 교수 연수에서부터 법교육의 모델을 단순한 지식 전달 유형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적 사고력을 통해 통찰하고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교사를 양성해야 교육 현장에서 법교육에서의 창의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법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체험활동에서 지도 교사는 각계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교사들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법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인사,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자원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모의법정과 모의의회에는 각 지역 법조인들이나 지역의 관계 공무원들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험활동은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사회과 교사들은 법교육에 관한 연구나 연수를 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법교육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3. 다양한 안내서 및 프로그램 개발

사회과 교육에서 법교육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한다. 학습자의 경우 법에 대해 딱딱하고 암기할 내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사례 중심의 법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으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사례 중심의 법교육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는 대안 교과서들도 발행되었다. 『법은 내 친구』, 『청소년의 법과 생활』, 『한국인의 법과 생활』 등이 법무부에서 출판한 대안 교과서들로 특히 『법은 내 친구』의 경우 차시별로 다양한 활동이 담긴 교수-학습 지도안과 학생활동지를 제시하여 교사가 실제 교실 수업 장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와 교재들은 법교육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창의체험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된 이상의 다양한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례 중심의 법교육 방안이나 대안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방법은 학생들이 법교육에 접근하기는 용이하나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방법을 스스로 고안해보는 등의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교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체험활동의 가이드 북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가이드 북에서의 법교육 방법론은 사례 해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찾아가는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 창의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

### 4. 견학(방문)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 및 내용의 다양화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 견학(방문) 수업은 대부분 1시간 단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기관 소개 영상 20분, 기관 투어 20분, 기관 담당자와의 대화 20분 등이다. 이러한 견학(방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기관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보다 법기관과 친숙한 관계를 도모하고 법문화 형성의 현장을 체험한다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견학 대상 기관의 홍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견학 프로그램을 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에 맞게 학계와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sup>7)</sup>



또한 단순히 사법 기관 중심의 방문이 아니라 법과 인권이나 헌정사의 역사적 현장이 되었던 장소도 법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예: 4·19 유적지, 국회 헌정기념관)

법교육은 법제도와 관련이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 그 자체에서 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견학(봉사활동을 포함)의 현장도 다양화할 수 있다. 청소년이 주로 취업하는 아르바이트 현장에 견학할 수 있고(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근로계약 문제), 다문화사회의 대표적 지역이나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을 견학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곳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를 통해 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 소년원에 대한 견학이나 봉사활동도 법교육의 여러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익한 사례가 될 것이다.

## 5. 법교육 모범사례 학교 발굴

## 6. 법의식 변화의 관찰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수의 입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법의식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sup>8)</sup> 이를 통해 창의체험활동을 통한 법교육의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법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7) 「법교육지원법」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8) 예컨대 곽한영(2007).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희택(2009). 학급자치활동이 초등학생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pp. 43-72.; 한아름(2009).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법교육의 효과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pp.79-115; 주우연(2010). 법교육 클럽 활동(CA)에 따른 학생들의 법의식 변화, 법교육연구 제5권 제1호, pp. 183-209.

## V. 결론

이상에서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법교육의 가능성, 방법론, 실천 과제들을 살펴 보았다. 우리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은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법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종래 법교육에서도 헌법교육과 생활법교육 등 목표와 교육 범위 설정에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 필자는 헌법교육과 생활법교육의 대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사회 현실에서 법적인 문제를 자각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의 전달과 사례 해결 능력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인권과 법문화에 대한 인식이 싹틀 수 있는 교육 방법론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천적인 관점에서는 프로그램의 마련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유형에 따라 실천 가능한 법교육의 유형과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제기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과 구상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것이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창의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의 프로그램을 학기 단위나 수업 단위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학교 상황과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학교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배정이나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운영 모습은 다음 기회에 논의하고자 한다.

2011 춘계(통산 9차) 정기 학술 발표회 자료집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법교육 실천

---

2011년 5월 21일 인쇄

2011년 5월 21일 발행

발행처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발행자 / 허 종 열

편집인 / 이 대 성, 김 상 돈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61(서초동 1650번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사무국

Tel: 02-3475-2431

E-mail: lawedu2008@paran.com

Homepage: <http://www.khlea.org>

인쇄처 / (주) 가람문화사

Tel: 02-873-2362

---